

제171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2010. 12. 9.)

〔 2011년도 거창군 기금운용 계획안 〕
검 토 보 고 서

총 무 위 원 회
[전문위원 이경기]

<의안번호 제2010 - 55호>

[2011년도 거창군 기금운용 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 출 일 자 : 2010. 11. 16
-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 다. 회 부 일 자 : 2010. 11. 17

2. 제안사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4조,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및 각 기금별 기금 설치·운용조례의 규정에 의거 관리중인 기금에 대하여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 의회의 승인을 득하기 위함.

3. 2011년도 기금개요

가.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142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나. 운용방침

- 자금운용체계의 이원화(총괄, 운영부서)로 책임, 투명성 확보
- 총괄부서 : 기획감사실, 운영부서 : 각 기금관리 운용 실.과
- 각 기금의 설치목적에 맞도록 기금을 관리, 운용

4. 기금운용 계획안 규모<총괄>

(단위 : 백만원)

기 금 명	2010년말 현 재 액 ①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11년도말 현 재 액 ④=①+②-③	증감
		수 입 ②	지 출 ③		
9 개	7,144	914	185	7,873	729
저소득주민자녀 장 학 기 금	514	20	20	514	0
기초생활보장기금	464	110	0	574	110
생활안정기금	138	72	80	130	△8
노인복지기금	1,044	30	30	1,044	0
여성발전기금	1,016	33	30	1,019	3
식품진흥기금	11	13	10	14	3
아람 예술제 진 흥 기 금	501	16	15	502	1
체육진흥기금	61	11	0	72	11
중 소 기 업 육 성 기 금	3,395	609	0	4,004	609

5. 검토의견

■ 주민생활지원과

(단위 : 백만원)

기금명	2010년말 현재액 ①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11년도말 현재액 ④=①+②-③	증감
		수입 ②	지출 ③		
5개	3,176	265	160	3,281	105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514	20	20	514	0
기초생활보장기금	464	110	0	574	110
생활안정기금	138	72	80	130	△8
노인복지기금	1,044	30	30	1,044	0
여성발전기금	1,016	33	30	1,019	3

◆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p11)

- 거창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거창군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 자녀 중 성적우수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조성 목표액은 5억 원이며, 재원조성은 군의 출연금, 기탁금, 예치금에 대한 이자 수입 및 기타수입금으로 조성 운영되고 있으며,
- 지원기준은 이자 수입액 범위 안에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기금에서 지원하고, 2011년도에는 총40명에게 지급할 계획으로 1인당 지원기준은 중학교 일반장학생에

게는 40만원을, 중학교 특별장학생과 고등학교 일반장학생에게는 각각 60만원을, 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게는 80만원을 지급하려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음.

- 기금조성 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 말 현재액은 514백만원이며, 2011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20백만원, 지출 20백만원이며 2011년도 말 현재액은 514백만원으로 기금은 농협에 예치되어 있음.
- 당초 기금설치 목적대로 기금이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기초생활보장 (p15) 및 생활안정기금(p20)

- 거창군 기초생활보장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 · 운용조례에 의거 저소득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기금으로서
- 기금조성 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 말 현재액은 602백만원이며, 2011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182백만원, 지출 80백만원이며 2011년도 말 현재액은 704백만원으로 기금은 농협에 예치되어 있음.
- 지원기준은 자활공동체의 사업자금 대여 및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기타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며
- 당초 기금설치 목적대로 기금이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노인복지기금(p25)

- 거창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제3조(기금의 조성)에 의거 거창군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되는 기금으로서 조성목표액은 10억원으로, 2007년도에 그 목표를 달성하였음.
- 기금조성 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 말 현재액은 1,044백만원이며, 2011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30백만원, 지출 30백만원이며 2011년도 말 현재액은 1,044백만원으로 기금은 농협에 예치·관리하고 있음.
- 당초 기금설치 목적대로 기금이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여성발전기금(p29)

- 거창군 여성정책발전위원회 및 기금설치·운용조례에 의거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를 위한 여성정책개발·연구 및 여성복지증진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2002년)으로
- 기금조성 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 말 현재액은 1,016백만원이며, 2011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33백만원, 지출 30백만원이며 2011년도 말 현재액은 1,019백만원으로 기금은 농협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음.
- 당초 기금설치 목적대로 기금이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민원봉사과(p33)

(단위 : 백만원)

기금명	2010년 말 현재액 ①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11년도 말 현재액 ④=①+②-③	증감
		수입 ②	지출 ③		
식품진흥기금	11	13	10	14	3

-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거창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식품위생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재원조성은 식품 위생법 제82조 및 같은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징수한 과징금,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기금운용에 따른 수익금 등으로 조성하며,
- 기금조성 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 말 현재액은 11백만원이며, 2011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13백만원, 지출 10백만원이며 2011년도 말 현재액은 14백만원으로 기금은 농협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음.
- 당초 기금설치 목적대로 기금이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문화관광과

(단위 : 백만원)

기금명	2010년말 현재액 ①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11년도말 현재액 ④=①+②-③	증감
		수입 ②	지출 ③		
2개	562	27	15	574	12
아림예술제 진홍기금	501	16	15	502	1
체육진홍기금	61	11	0	72	11

◆ 아림예술제 진홍기금(p39)

- 아림예술제 진홍기금은 거창군 아림예술제 진홍기금 조성 운영조례에 의거 향토 문화 · 예술축제인 아림예술제의 사업과 활동을 지원할 목적으로 진홍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설치된 것으로 재원조성 방법은 출연금 및 보조금과 아림예술제 행사잉여금, 기타수입금 등으로 하고 있으며, 지원기준은 매년 아림 예술제 위원회의 사업계획에 따라 총 행사비의 일정부분을 지원하고 있음.
- 기금조성 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 말 현재액은 501백만원이며, 2011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16백만원, 지출 15백만원이며 2011년도 말 현재액은 502백만원으로 기금은 농협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음.
- 당초 기금설치 목적대로 기금이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체육진흥기금(p43)

- 체육진흥기금은 거창군 체육진흥기금조성 운영조례에 의거 거창군 체육회의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 주요규정을 살펴보면
 - 기금운용 계획은 매 회계연도마다 체육회의 사업계획을 받아 이자액 범위 내에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며,
 - 기금사용은 연간 이자수입액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기금 재원조성은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과 체육단체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체육시설에 대한 임대료, 사용료 수입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 기금조성 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 말 현재액은 61백만원이며, 2011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11백만원이며 2011년도 말 현재액은 72백만원으로 기금은 농협에 예치되어 있음.
- 당초 기금설치 목적대로 기금이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1010추진단(p47)

(단위 : 백만원)

기금명	2010년말 현재액 ①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11년도말 현재액 ④=①+②-③	증감
		수입 ②	지출 ③		
중소기업육성기금	3,395	609	0	4,004	

○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거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운용하는 것으로서 관내 중소기업에 낮은 이자로 사업자금을 융자함으로서 자금난으로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기금적립 목표액은 100억원이며, 2011년도에는 5억원을 적립할 계획이고
 - ※ 2014년까지 매년 20억원, 2015년 23억원 적립계획임.
- 기금 지원대상은 군내에 주사무소를 두고 제조업, 공예품 및 화강석 채석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도가 크고 국가시책을 수행하는데 지원이 필요한 업체에 지원하며,
- 기금 재원조성은 군 출연금과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기타 수입 등으로 규정되어 있음.

○ 기금조성 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 말 현재액은 3,395백만원이며, 2011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609백만원이며 2011년도 말 현재액은 4,004백만원으로 기금은 농협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음.

○ 당초 기금설치 목적대로 기금이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참 고 자 료

□ 거창군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 1조 (목적)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거창군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기금의 조성)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2.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3.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

제 3조 (기금의 사용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다만, 식품위생 발전을 위하여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추진하는 광역 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1.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명예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한 활동비 지원
2.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3. 위해식품 등에 대한 신고자 보상
4. 식품위생교육 및 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5.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서 법 시행령 제42조에서 정하는 사업
6. 기금의 관리·운용에 수반되는 부대 경비

제 4조 (기금운영위원회 구성) ①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거창군식품진흥기금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 11조 (기금의 관리·운용) 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른 회계로부터 독립된 기금계좌를 설정하여 관리·운용 한다.

② 기금의 여유자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이자수익율이 높은 금융 상품으로 예치하여 관리한다.

□ 거창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 1조 (목적)이 조례는 저소득주민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을 위하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기금의 설치)

군수는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 지급에 필요한 자금의 확보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한다.

제 3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기금조성 목표액에 도달 될 때까지 계속 조성한다.

1. 군의 출연금
2. 기탁금
3. 예치금에 대한 이자수입금 및 기타수입금

제 4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군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자녀의 장학금 지급 용도에 사용한다.

제 5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군수가 운용·관리하되,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한다.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군내의 금융기관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장학금은 매년 적립금의 이자 수입액 범위 안에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한 경우에는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 8조 (장학생의 자격) ① 일반장학생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 중에서 입학 또는 재학중 학업성적이 전과목 총점에 대한 평균점수가 100분의 50이상인 중학생 및 고등학생으로 한다.

② 특별장학생은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 위탁아동 또는 학교 내·외의 각종 학업 및 실기 관련대회 입상자와 기타 정부의 자활시책 추진에 모범이 된 자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장학생중 이미 국가 또는 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

제 10조 (장학생 선발) 장학생의 선발은 다음 절차에 의한다.

1. 읍·면장은 제8조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년 군수에게 추천한다.

2. 군수는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읍·면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거창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발한다.

□ 거창군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제 1조 (목적)이 조례는 거창군 노인의 자립기반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기금의 설치)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거창군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 한다.

제 3조 (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 한다.

1. 군 출연금

2.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또는 기타 수입금 등

② 군수는 제1항 제1호의 출연금을 위하여 매 회계연도 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처리 할 수 있다.

제 4조 (기금의 운용 관리) ① 기금은 군수가 운용 관리하되 노인복지기금 계좌로 별도 관리 한다.

②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군 금고에 수익률이 높은 방법으로 예치

하여 관리 한다.

③ 기금 집행은 당해 연도 이자 수익금 범위 내에서 지출하되 수익금의 10%이상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 할 수 있다.

제 5조 (기금의 용도)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목적에 사용한다.

1. 충효, 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
2. 군 노인 회보 발간
3. 노인능력은행 및 공동작업장 운영 지도
4. 노인교육과 노인교실 운영
5. 노인문제상담소 운영
6. 사회봉사활동 참여와 지도
7. 대한노인회 거창군지회 운영 지원
8.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9. 기타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 거창군 여성정책발전위원회 및 기금설치·운용조례

제 1조 (목적)이 조례는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확대를 위한 여성정책개발·연구 및 여성복지증진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거창군여성정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여성들의 역할을 지원하기 위한 거창군 여성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설치 및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14조 (재원)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이자수익금
3. 기타 수입금

제 15조 (용도)①기금은 여성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

1. 여성단체 등을 통한 건전한 군민운동 전개
2. 여성사회참여 확대 및 여성복지증진을 위한 조사 연구
3. 우수여성지도자 양성을 위한 교육, 여성지도자 국내외 연수 및 여성단체의 국제교류
4. 여성지위 향상과 여성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은 당해연도 이자수입액 범위안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기금의 결산결과 잉여금이 발생한 때에는 이를 전액 기금에 적립하여야 한다.

제 16조 (운용 관리)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거 운용하여야 한다.

②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거창군관내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 지출, 출납, 보관의 절차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 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 거창군 아림예술제진흥기금조성 운영조례

제 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거 아림예술제(이하 "아림제"라 한다)의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거창군아림제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조성,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용어의 정의)① "아림제"라 함은 향토문화예술의 꽃을 피우고 군민의 화합의 장이 되도록 아림예술제위원회가 추진하는 문화예술행사를 말한다.

② "아림예술제위원회"는 "아림제"의 문화행사를 추진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제 3조 (기금의 조성)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아림제 행사 잉여금 3. 기타 수익금

② 거창군은 제1항의 기금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매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 할 수 있다.

제 5조 (기금의 용도)① 기금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 이외의 목적에는 사용 할 수 없다.

1. 아림제 행사추진

2. 기타 아림제 진흥과 관련된 사업이나 활동

② 이 기금은 연간 이자수입액 범위내에서만 사용한다.

□ 거창군 체육진흥기금조성 운영조례

제 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거 거창군 체육회(이하 "체육 회"라 한다)의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거창군 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조성,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기금의 조성)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체육단체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거창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제2조 제1호의 체육시설에 대한 임대 및 사용료수입

4. 기타 수입금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기금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 할 수 있다.

제 4조 (기금의 사용)① 기금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외의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지방체육 진흥사업

2. 우수선수 육성 사업

3. 군민체육대회 개최

4. 도민체육대회 참가

5. 기타 체육진흥과 관련되는 사업이나 활동

② 기금은 연간 이자수입액 범위내에서만 사용한다.

□ 거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 1조 (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역 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 14)

제 2조 (기금의 설치) 군수는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의 확보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한다.

제 3조 (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기타 수입금

② 군수는 기금조성에 필요한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 4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군내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이차보전 재원
2.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규칙이 정하는 사항

제 8조 (중소기업체에 대한 지원) 군수는 군내 중소기업 등이 기금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조성된 재원(이하 "자금"이라 한다)을 융자받은 경우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차보전금을 지원한다.

제 10조 (융자금의 용도) ① 군수가 융자대상 업체에 대하여 융자지원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경영안정자금
 2. 기술개발자금
 3. 시설 현대화자금
 4. 기타 규칙에서 정하는 용도에 소요되는 자금
- ②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자금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